프랑스 난방 온도제한 및 위반시 제재 제도에 관하여

정보신청기관 :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 에너지관리팀

Ⅰ. 들어가며

1973년과 1979년의 석유에너지 위기 이후에, 석유 생산가격이 오르면서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현재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소비에 대한 통제가 있지 않다면 자원의 낭비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환경적 문제도 점점 심각하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도 이와 같은 상황과 전혀 다를 바 없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주거와 3차 서비스업분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므로 난방에너지에 대한 소비를 통제하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실질적으로 1973년에 주거분야와 3차 산업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비율이 전체의 38.4%였지만 1994년에는 45.5%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분야의 에너지 소비영역을 살펴보면 주요 거주건물이나 2차 거주지에서 소비하는 것이 그중 2/3이고, 사무실, 상가, 병원, 교육기관, 호텔 등 3차 서비스업종에서 소비된 비율이 1/3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많은 부분이 난방에너지이다. 그래서 난방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주거분야와 제3차 산업분야에 대한 에너지통제 정책의 큰 축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73년 1차석유쇼크 이후로, 특히 난방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 조치들이 네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째로, 특히 난방온도 통제를 통한 에너지 절약이다.

둘째로, 1976년부터 신규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열조절 장치의 설치이다.

셋째로, 열조절 장치의 설치를 위하여 기존 건물에 대하여는 재정적, 금융적 기부를 함으로서 관련 공사를 장려한다.

넷째로, 공공건물에 있어서는 에너지 통제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

Ⅱ. 난방에너지제한 관련 법률규정

프랑스에서는 건축 및 주거 법전(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에서 난방에 관련한 규정

들을 둠으로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즉, 건축과 주거에 관한 법 제1권 제3편 "난방, 수도공급 및 건물의 벽면 닦아내기"에서 난방에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장의 규정들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통제정책의 필요성에서 규정되었는데, 제131-1조에서 제131-6조까지는 난방에너지의 소비를 통제하면서 건물의 점유자에게 적절한 온도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입법은 난방조절장치의 설치에 관한 계약의 틀 안에서 난방온도를 제한하고자 하고, 온수 공급과 난방비용의 개별화를 장려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1977년 7월19일 법률 제74-805의 제6조에 의해서 수정된,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1974년 10월 29일의 법률 제74-908의 제2조에 의하여, 모든 이용자와 사용자에 의한 공기온도 및 난방온도설비장치의 사용은 에너지사용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국사원의 명령에 의해서 정해진 수치에 맞추어서 공간의 공기온도조절과 난방온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고 이러한 규정은 이 명령의 효력발생일에 유효한 계약에 적용된다. 상호 일치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모든 당사자는 계약의 수정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난방온도설비장치의 설비를 유도하고 있다.

② 1977년 7월 19일의 법률 제77-804의 제6조에 의해서 수정된, 1974년 10월 29일의 법률 제74-908의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1974년 11월 2일부터, 난방과 공기조절 설비이용과 관련한 모든 계약상의 조항들은, 특히 부동산건물 관리를 위하여 이것의 이용과 관련되는 모든 조항은, 그것이 에너지 소비량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서비스 보수 형태를 구성할 때는 무효이다.

1977년 7월 19일의 법률 제77-804의 제3조 2의 7에 의해서 1974년 10월 29일의 법률 제74-908에 첨가된 제3조 3에 의하면, 국사원의 명령은 위에서 제시된 제3조의 적용요건을 규정한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에너지절약의 효과를 위해서 국가이름으로 체결되는 난방개발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술조건명세서나 공동규정조건명세서 규정의 조건들은 모든 계약에서 마찬가지로 의무화 할 수 있다. 여기서도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모든 당사자는 계약의 수정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③ 1974년 10월 29일의 법률 제74-908의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동난방설비를 갖춘 모든 집합건물은 기술이 허용하는 한, 개인자격으로 점유된 각각이 장소에 공급되는 더운 물과 열기의 양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지녀야 한다.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혹은 반대의 관행, 점유자들의 부담으로 되는 온수와 난방의 비용은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산된 열량비용을 구성한다.

에너지 사용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견해를 수렴한 후 취해진 국사원의 명령은 이러한 적용조건과, 특히 작동장비에 대한 규범의 특성들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비의 통제에 대한 규범의 특성들 그리고 본 조의 규정 전부 혹은 일부 적용을 받는 지역이나 작업의 범주들을 정한다. 뿐만 아니라 이 시행령은 위에서 언급한 정해진 비용부분, 규정된 공사시행기간, 그리고 과도한 비용이나 기술적 불가능을 이유로 위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에 저촉될 수 있는 조건이나 경우들도 정한다.

④ 작동장비에 대한 규범의 특성들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설의 통제에 대한 규범의 특성들 그리고 이러한 규정 전부 혹은 일부 적용을 받는 장소나 건축물의 범주들은 국사원의 명령에 의해서 정해진다.

⑤ 법률 제111-10조에 의한 시행령은 작동장비에 대한 규범들의 성격, 일정장소의 공기조절 혹은 난방을 위한 시설의 통제에 대한 규범들의 성격, 그리고 본 항의 규정에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받는 장치의 범주를 정한다.

이 시행령은 본 조의 적용조건과 특히 규정된 공사의 시행기간 그리고 과도한 비용이나 기술적 불가능을 이유로 이러한 공사를 실행할 의무와 저촉될 수 있는 조건이나 경우를 정한다.

⑥ 1974년 10월 29일 법률 제74-908의 제9조에 의하면, 에너지 사용에 대한 1948년 3월 10일의 법률 제48-400의 제3조에 의해서 제정된 방문권과 동법 제5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법 제131-4조에 있는 규정의 통제로 난방과 공기조절의 공동설비에 대해서 적용.
- 법 제131-1조에서 법 제131-4조의 규정의 통제로 산업 · 상업의 시설과 공공출입시설에 대해서 적용

이러한 통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법 제152-1조에 정해진 공무원은 1948년 3월 10일 법률 제48-400의 제3조와 제5조에 각각 정해진 권한을 실행할 수 있다.

Ⅲ. 난방에너지제한과 관련 하위 법령

난방에너지통제와 관련한 난방온도 제한에 대하여는 '건축 및 주거 법정' 의 명령 제131-19조에서 제131-24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난방온도의 정의와 온도의 측정방법

여기에서 난방온도라 함은 난방으로 사용되는 에너지가 무엇이던, 열을 생산하는 방식이 무엇이던 간에 난방설비의 작동의 결과로서 발행하는 열의 온도이다.

그리고 이법의 통제를 받는 공간은 주거공간 전체이며 일부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난방온도의 측정방법은 바닥에서 1.5m에서 방의 중앙에서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주거공간의 평균온도나 사용구역의 전체 평균온도 혹은 생활공간의 평균온도는 각각 공간의 부피에 따라서 평균값으로 계산되고, 각 구역이나 각 방에서 측정된 온도의 전체 평균이다.

2. 적용범위 및 최고 온도

주거로 사용되는 공간과 교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 일반인의 방문을 받는 공공공간에서는 비점유기간을 제외하고는 평균 19도로 정해진다. 이러한 공간의 기준은 거주 공간 전체나 혹은 거주나 상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전체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적·과학적·스포츠적·예술적·산업적·상업적, 혹은 실행되는 농업적 성질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한 후에 이해관계 있는 장관들과 건설교통부장, 산업자원부장관의 공동결정으로 위에서 정한 온도와 다른 온도를 기준온도로 정한다. 뿐만 아니라 비입원기관에서 거주하며 의료행위를 하는 곳·지역·기관, 입원기관, 그리고 어린이나 노인들을 유숙시키는 거주지·지역·기관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난방최고 온도를 정한다.

비점유기간 중의 제한온도는 이러한 공간이 연속적으로 24시간 이상의 기간 동안 비점유상태로 있는 경우에 주거공간의 각 방들이 전체에 대하여 또는

사용되는 장소, 주거공간, 같은 건물 안에 포함되는 공간들 전체에 대하여 정해진다.

비점유기간이 24시간이상 48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16도이며, 비점유기간이 4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8도이다.

Ⅳ. 난방에너지 통제에 관한 처벌규정

난방온도에 대한 규정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건축 및 주거법전' 의 명령 제152-8조에 있는데, 이 규정은 다시 형법 제131-13조를 원용하고 있다.

즉, 명령 제131-19조에서 제131-23조까지의 규정(난방온도의 통제를 위한 적용영역과 최고온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형법 제131-13조의 제5항으로 처벌된다. 그리고 난방온도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조사하는 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도 같은 형벌에 처한다. 형법 제131-13조의 제5항은 위경죄에 해당하는 벌금형으로서 초범인 경우에는 1500유로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으며, 재범이나 누범인 경우에는 3000유로까지 과할 수 있다.

참고법조문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Partie Législative)
건축 및 주거법전(법률부)

Title Ⅲ : Chauffage, fournifure d'eau et ravalement des immeubles
제3편 : 난방, 수도 공급 및 건물의 벽면 닦아내기

Chapitre Ier : Chauffage des immeubles
제1장 : 건물의 난방

Article L131-1

(Loi n° 99-471 du 8 juin 1999 art. 5 I Journal Officiel du 9 juin 1999)
(Loi n° 2006-1772 du 30 décembre 2006 art. 59 I Journal Officiel du 31 decembre 2006)

Conformément à l'article 2 de la loi n° 74-908 du 29 octobre 1974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modifiée par l'article 6 de la loi n° 77-804 du 19 juillet 1977, la mise en oeuvre des installations de chauffage

et de climatisation par tous exploitants ou utilisateurs doit être assurée de façon à limiter la température de chauffage et de climatisation des locaux à des valeurs fixées par décrets en Conseil d'Etat, après avis du comité consultatif pour l'utilisation de l'énergie.

Les dispositions de l'alinéa précédent s'appliquent aux contrats en cours à la date d'entrée en vigueur de ces décrets. A défaut d'accord amiable, toute partie peut demander en justice la révision du contrat.

법률 제131-1조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 74-805의 제6조에 의해서 수정된,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1974년 10월 29일의 법률 제74-908법의 제2조에 의하여, 모든 이용자와 사용자에 의한 공기온도 및 난방온도설비장치의 사용은, 에너지사용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국사원의 명령에 의해서 정해진 수치에 맞추어서 공간의 공기온도조절과 난방온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이 시행령의 효력발생일에 유효한 계약에 적용된다. 상호 일치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모든 당사자는 계약의 수정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rticle L131-2

(Loi n° 99-471 du 8 juin 1999 art. 5 I Journal Officiel du 9 juin 1999)
(Loi n° 2006-1772 du 30 décembre 2006 art. 59 I Journal Officiel du 31 décembre 2006)

Ainsi qu'il est dit à l'article 3 de la loi n° 74-908 du 29 octobre 1974, modifié par l'article 6 de la loi n° 77-804 du 19 juillet 1977 :

Sont nulles et de nul effet, à compter du 2 novembre 1974, toutes stipulations contractuelles relatives à l'exploitation des installations de chauffage et de climatisation ou se référant à cette exploitation, notamment pour la gestion des immeubles, lorsqu'elles comportent des modalités de rémunération des services favorisant l'accroissement de la quantité d'énergie consommée.

Conformément à l'article 3 ter ajouté à la loi n° 74-908 du 29 octobre 1974 par l'article 3 bis VII de la loi n° 77-804 du 19 juillet 1977,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récis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e l'article 3 reproduit à l'alinéa premier. Il peut également rendre obligatoires dans tous les contrats celles des dispositions du cahier des prescriptions communes ou du cahier des clauses technique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marchés d'exploitation de chauffage passés au nom de l'Etat, qui ont pour effet de permettre des économies d'énergie. A défaut d'accord amiable, toute partie peut demander en justice la révision du contrat.

법률 제131-2조

1977년 7월 19일의 법률 제77-804의 제6조에 의해서 수정된, 1974년 10월 29일의 법률 제74-908의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1974년 11월 2일부터, 난방과 공기조절 설비이용과 관련한 모든 계약상의 조항들은, 특히 부동산건물 관리를 위하여, 이것의 이용과 관련되는 모든 조항은 그것이 에너지 소비량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서비스 보수 형태를 구성할 때는 무효이다.

1977년 7월 19일의 법률 제77-804의 제3조 2의 7에 의해서 1974년 10월 29일의 법률 제74-908에 첨가된 제3조3에 의하면, 국사원의 명령은 첫 항에서 제시된 제3조의 적용요건을 규정한다.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있는 국가의 이름을 체결된 난방개발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기술조건 명세서나 공동규정조건 명세서 규정의 조건은 모든 계약에서 마찬가지로 의무적일 수 있다.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모든 당사자는 계약의 수정의 위해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Article L131-3

(Loi n° 99-471 du 8 juin 1999 art. 5 I Journal Officiel du 9 juin 1999)
(Loi n° 2006-1772 du 30 décembre 2006 art. 59 I Journal Officiel du 31 décembre 2006)

Ainsi qu'il est dit à l'article 4 de la loi n° 74-908 du 29 octobre 1974 :

Tout immeuble collectif pourvu d'un chauffage commun doit comporter, quand la technique le permet, une installation permettant de déterminer la quantité de chaleur et d'eau chaude fournie à chaque local occupé à titre privatif.

Nonobstant toute disposition, convention ou usage contraires, les frais de chauffage et de fourniture d'eau chaude mis à la charge des occupants comprennent, en plus des frais fixes, le coût des quantité de chaleur calculées comme il est dit ci-dessus.

Un décret pris en Conseil d'Etat, après avis du comité consultatif pour l'utilisation de l'énergie, fix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et, notamment, la part des frais fixes visés au précédent alinéa, les délais d'exécution des travaux prescrits, ainsi que les cas et conditions dans lesquels il peut être dérogé à l'obligation prévue au premier alinéa, en raison d'une impossibilité technique ou d'un coût excessif.

법률 제131-3조

1974년 10월 29일의 법률 제74-908의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동난방설비를 갖춘 모든 집합건물은 기술이 허용하는 한, 개인자격으로 점유된 각각의 장소에 공급되는

온수와 열기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혹은 반대의 관행, 점유자들의 부담으로 공급되는 온수와 난방의 비용은,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산된 열량비용을 구성한다.

에너지 사용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견해를 수렴한 후 취해진 국사원의 명령은 본조의 적용조건과, 특히 전항에 대해서 정해진 비용부분, 규정된 공사시행기간, 그리고 과도한 비용이나 기술적 불가능을 이유로 전항에 정해진 의무사항에 저촉될 수 있는 조건이나 경우들을 정한다.

Article L131-4

(Loi n° 99-471 du 8 juin 1999 art. 5 I Journal Officiel du 9 juin 1999)
(Loi n° 2006-1772 du 30 décembre 2006 art. 59 I Journal Officiel du 31 décembre 2006)

Les caractères définissant les normes d'équipement, de fonctionnement et de contrôle des installations consommant de l'énergie et les catégories d'ouvrages et locaux soumises en tout ou partie aux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fixé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법률 제131-4조

작동장비에 대한 규범의 특성들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설의 통제에 대한 규범의 특성들 그리고 본 조의 규정 전부 혹은 일부 적용을 받는 장소나 건축물의 범주들은 국사원의 명령에 의해서 정해진다.

Article L131-5

(Loi n° 99-471 du 8 juin 1999 art. 5 I Journal Officiel du 9 juin 1999)
(Loi n° 2006-1772 du 30 décembre 2006 art. 59 I Journal Officiel du 31 décembre 2006)

Les décrets prévus à l'article L. 111-10 déterminent également les caractères définissant les normes d'équipement, de fonctionnement et de contrôle des installations destinées à assurer le chauffage ou le conditionnement d'air des locaux existants et les catégories d'installations soumises en tout ou partie aux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Ces mêmes décrets déterminent enfin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et, notamment, les délais d'exécution des travaux prescrits, ainsi que les cas et conditions dans lesquels il peut être dérogé à l'obligation d'exécuter ces travaux, en raison d'une impossibilité technique ou d'un coût excessif.

법률 제131-5조

법률 제111-10조에 의한 시행령은 작동장비에 대한 규범들의 성격, 일정장소의 공기조절 혹은 난방을 위한 시설의 통제에 대한 규범들의 성격, 그리고 본 항의 규정에 전부 또는일부의 적용을 받는 장치의 범주를 정한다.

이 시행령은 본 조의 적용조건과 특히 규정된 공사의 시행기간 그리고 과도한 비용이나 기술적 불가능을 이유로 이러한 공사를 실행할 의무와 저촉될 수 있는 조건이나 경우를 정한다.

Article L131-6

(Loi n° 96-1236 du 30 décembre 1996 art. 44 Journal Officiel du 1er janvier 1997)
(Loi n° 99-471 du 8 juin 1999 art. 5 I Journal Officiel du 9 juin 1999)
(Loi n° 2006-1772 du 30 décembre 2006 art. 59 I Journal Officiel du 31 décembre 2006)

Conformément à l'article 9 de la loi n° 74-908 du 29 octobre 1974, le droit de visite institué par l'article 3 de la loi n° 48-400 du 10 mars 1948 sur l'utilisation de l'énergie ainsi que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5 de la même loi sont étendus :

pour les installations collectives de chauffage et de conditionnement, au contrôle des dispositions prévues à l'article L. 131-4 ;

pour les établissements industriels et commerciaux et pour l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au contrôle des dispositions prévues aux articles L. 131-1 et L. 131-4.

Pour effectuer ces contrôles, les agents visés à l'article L. 152-1 sont également habilités à exercer les pouvoirs respectivement prévus aux articles 3, d'une part, et 5, d'autre part, de la loi n° 48-400 du 10 mars 1948

법률 제131-5조

1974년 10월 29일 법률 제74-908 제9조에 의하면, 에너지 사용에 대한 1948년 3월 10일의 법률 제48-400의 제3조에 의해서 제정된 방문권과 동 법 제5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법 제131-4조에 있는 규정의 통제로 난방과 공기조절의 공동설비에 대해서 적용
- 법 제131-1조에서 법 제131-4조의 규정의 통제로, 산업.상업의 시설과 공공출입건물에 대해서 적용

이러한 통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법 제152-1조에 정해진 공무원은 1948년 3월 10일 법 제48-400의 제3조와 제5조에서 각각 정해진 권한을 실행할 권한이 마찬가지로 부여된다.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건축 및 주거법전(명령 · 규칙부)

Liver Ier Dispositions générales
Title Ⅲ : Chauffage et ravalement des immeubles
Chapitre Ier : Chauffage et ravalement des immeubles et performance énergétigue
제 1 권 : 일반규정
제 3 편 : 난방 및 건물의 벽면 닦아내기
제 1 장 : 건물의 난방 및 냉방 및 에너지 평등

Section 4 : Limitation de la température de chauffage
제 4 절 : 난방의 온도 제한

Article R131-19

(Décret n° 2000-613 du 3 juillet 2000 art. 5 Journal Officiel du 5 juillet 2000)
(Décret n° 2007-363 du 19 mars 2007 art. 2 I Journal Officiel du 21 mars 2007)

Pour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 présente section et des arrêtés prévus aux articles R. 131-22 et R. 131-23 :
- la température de chauffage est celle qui résulte de la mise en oeuvre d'une installation de chauffage, quelle que soit l'énergie utilisée à cette fin et quels que soient les modes de production de chaleur ;
- un local à usage d'habitation est constitué par l'ensemble des pièces d'un logement ;
- la température de chauffage d'une pièce d'un logement ou d'un local à usage autre que l'habitation est la température de l'air, mesurée au centre de la pièce ou du local, à 1,50 mètre au-dessus du sol ;
- la température moyenne d'un logement ou d'un ensemble de locaux à usage autre que l'habitation est la moyenne des températures de chauffage mesurées dans chaque pièce ou chaque local, le calcul de la moyenne étant pondéré en fonction du volume de chaque pièce ou local.

명령 제131-19조

본 장의 규정과 명령 제131-22조에서 제131-23조에 의한 부령들의 적용에 대하여;

난방온도는 난방으로 사용된 에너지가 무엇이건 그리고 열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무엇이던 간에 난방설비의 작동의 결과로서의 온도이다.

주거로 사용되는 장소는 거주공간들의 전체로 구성되어진다.

주거공간 혹은 주거외 장소들의 난방온도는 바닥에서 1.5m이고 주거공간(방)의 중앙에서 측정된 공기온도이다.

주거공간의 평균 온도나 주거외 사용장소의 전체평균온도 혹은 각각 공간 안에서 측정된 난방온도의 평균이고, 평균의 계산은 각 구역이나 장소의 부피에 따라서 균형이 잡힌다.

Article R131-20

(Décret n° 79-907 du 22 octobre 1979 art. 1 Journal Officiel du 23 octobre 1979)
(Décret n° 2000-613 du 3 juillet 2000 art. 5 Journal Officiel du 5 juillet 2000)
(Décret n° 2007-363 du 19 mars 2007 art. 2 I Journal Officiel du 21 mars 2007)

Dans les locaux à usage d'habitation, d'enseignement, de bureaux ou recevant du public et dans tous autres locaux, à l'exception de ceux qui sont indiqués aux articles R. 131-22 et R. 131-23, les limites supérieures de température de chauffage sont, en dehors des périodes d'inoccupation définies à l'article R. 131-20, fixées en moyenne à 19° C :

- pour l'ensemble des pièces d'un logement ;
- pour l'ensemble des locaux affectés à un usage autre que l'habitation et compris dans un même bâtiment.

명령 제131-20조

주거로 사용하는 공간, 교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 일반인의 방문을 받는 공간 그리고 다른 모든 공간에서, 규칙 제131-22조와 제131-23조에 예시된 것의 예외로서, 난방온도의 최고온도제한은 규칙 제131-20조에서 정의된 비점유기간이외에는 평균 19도로 정해진다.

- 주거공간의 전체에 대해서
- 동일한 건물 안에 포함된 것으로 주거이외이 용도에 배속된 장소의 전체에 대해서

Article R131-21

(Décret n° 2000-613 du 3 juillet 2000 art. 5 Journal Officiel du 5 juillet 2000)
(Décret n° 2007-363 du 19 mars 2007 art. 2 I Journal Officiel du 21 mars 2007)

Pendant les périodes d'inoccupation des locaux mentionnés à l'article R. 131-20, d'une durée égale ou

supérieure à vingt-quatre heures consécutives, les limites de température moyenne de chauffage sont, pour l'ensemble des pièces d'un logement et pour l'ensemble des locaux affectés à un usage autre que l'habitation et compris dans un même bâtiment, fixées ainsi qu'il suit :

16° C lorsque la durée d'inoccupation est égale ou supérieure à vingt-quatre heures et inférieure à quarante-huit heures ;

8° C lorsque la durée d'inoccupation est égale ou supérieure à quarante-huit heures.

명령 제131-21조

명령 제131-20조에서 언급한 곳의 장소의 비점유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24시간 이상의 기간인 때에, 난방의 평균온도에 대한 제한은 주거공간의 각 방들의 전체에 대하여 그리고 같은 건물 안에 포함된 주거외 다른용도에 배속된 장소의 전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24시간이상 48시간이하의 비점유기간인 경우에는 16도

비점유기간이 4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8도

Article R131-22

(Décret n° 2000-613 du 3 juillet 2000 art. 5 Journal Officiel du 5 juillet 2000)
(Décret n° 2007-363 du 19 mars 2007 art. 2 I Journal Officiel du 21 mars 2007)

Un arrêté conjoint du ministre chargé de l'industrie et du ministre chargé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pris après avis du comité consultatif de l'utilisation de l'énergie, et, le cas échéant, du ou des ministres intéressés, dresse la liste des catégories de locaux qui, non affectés à usage de bureaux et ne recevant pas du public, doivent, eu égard à la nature des activités d'ordre administratif, scientifique, sportif, artisanal, industriel, commercial ou agricole qui s'y exercent, être soumis à des limites de température de chauffage différentes de celles qui sont fixées par les articles R. 131-20 et R. 131-21. Cet arrêté détermine, par catégories et en tenant compte, le cas échéant, des périodes d'inoccupation, les limites supérieures de chauffage calculées conformément à l'article R. 131-19 qui sont applicables à ces divers locaux.

명령 제131-22조

에너지이용 자문위원회의 견해를 수렴한 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관계장관들과의 공동부령은 공간적 범주의 범위를 정한다. 그 범위는 행정적, 과학적, 스포츠적, 예술적, 산업적, 상업적 혹은 농업적 질서의 성질을 고려하여 규칙 제131-20조와 제131-21조에 의해서 정해

진 것과 다른 난방온도의 한계로 정해져야 한다. 이 부령들은 종목별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점유기간를 고려하면서, 이들 다양한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 제131-19조에 의해서 계산된 난방최고한계를 결정한다.

Article R131-23

(Décret n° 2000-613 du 3 juillet 2000 art. 5 Journal Officiel du 5 juillet 2000)
(Décret n° 2007-363 du 19 mars 2007 art. 2 I Journal Officiel du 21 mars 2007)

En ce qui concerne les logements, les locaux et les établissements où sont donnés des soins médicaux à des personnes non hospitalisées, les établissements hospitaliers et les logements, locaux et établissements où sont logés ou hébergés des personnes âgées ou des enfants en bas âge, des arrêtés conjoints du ministre chargé de l'industrie, du ministre chargé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et du ministre chargé de la santé, pris après avis du comité consultatif de l'utilisation de l'énergie et, le cas échéant, du ou des ministres interessés fixent, par catégorie, les limites supérieures de chauffage calculées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R. 131-19 qui sont applicables à ces locaux ou établissements.

명령 제131-23조

입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주거지, 장소, 시설, 입원시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을 유숙시키는 주거지, 장소, 시설에 있어서 에너지사용의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건설교통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의 공동결정,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장관들과의 공동결정으로 범주별로 이들 시설이나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 제13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난방최고한계를 정한다.

Article R131-24

(Décret n° 2000-613 du 3 juillet 2000 art. 5 Journal Officiel du 5 juillet 2000)
(Décret n° 2007-363 du 19 mars 2007 art. 2 I Journal Officiel du 21 mars 2007)

Les normes mentionnées à l'article L. 131-4 sont fixées après avis du comité consultatif de l'utilisation de l'énergie.

명령 제131-24조

법률 제131-4조에 언급한 규범들은 에너지이용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수렴한 후 정해진다.

Title Ⅴ : Contrôle et dispositions pênales
Chapitre Ⅱ : Sanctions pênales

제5편 : 통제 및 처벌규정
제2장 : 형사적 제재

Section 4 : Chauffage
제4절 : 난방

Article R152-8

(Décret n° 2002-824 du 3 mai 2002 art. 2 Journal Officiel du 5 mai 2002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3)
(Décret n° 2004-964 du 9 septembre 2003 art. 2 Journal Officiel du 10 septembre 2004)
(Décret n° 2004-964 du 9 septembre 2004 art. 2 Journal Officiel du 10 septembre 2004)

Les infractions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R. 131-19 à R. 131-23 sont punies de l'amende prévue par le 5° de l'article 131-13 du code pénal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cinquième classe qui peut être portée au double en cas de récidive.

Est punie de la même peine l'opposition à l'exercice des fonctions des agents chargés de constater les infractions.

명령 제152-8조

명령 제131-19조에서 제131-23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함은 재범의 경우에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다섯 번째 등급의 위반으로서, 형법 제131-13조의 제5항에 의한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위반에 대하여 조사할 책임을 진 공무원의 공무집행행위를 방해하는 자도 같은 형벌로 처벌된다.

CODE PENAL
(Partie Législative)
형법전(법률부)

Title Ⅲ : Des peines
Chapitre Ier : De la nature des peies
제3편 : 형벌
제1장 : 형벌의 성격

section 1 : Des peines applicables aux personne physique
제1절 : 인(人)에 적용하는 형벌

Sous-section 4 : Des peines contraventionnelles
제1-4절 : 위경죄

Article 131-13

(Ordonnance n° 2000-916 du 19 septembre 2000 art. 3 Journal Officiel du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oi n° 2003-495 du 12 juin 2003 art. 4 I Journal Officiel du 13 juin 2003)

(Loi n° 2005-47 du 26 janvier 2005 art. 9 II Journal Officiel du 27 janvier 2005 en vigueur le 1er avril 2005)

Constituent des contraventions les infractions que la loi punit d'une amende n'excédant pas 3000 euros.

Le montant de l'amende est le suivant :

1° 38 euros au plus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

2° 150 euros au plus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2e classe ;

3° 450 euros au plus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

4° 750 euros au plus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4e classe ;

5° 1500 euros au plus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montant qui peut être porté à 3 000 euros en cas de récidive lorsque le règlement le prévoit, hors les cas où la loi prévoit que la récidive de la contravention constitue un délit.

명령 제131-13조

법률이 3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으로 정한 위반죄는 위경죄를 구성한다.

그 벌금액은 다음과 같다.

1.1 등급의 위경죄에 대해서는 38유로 이하

2.2 등급의 위경죄에 대해서는 150유로 이하

3.3 등급의 위경죄에 대해서는 450유로 이하

4.4 등급의 위경죄에 대해서는 750유로 이하

5.5 등급의 위경죄에 대해서는 1500유로 이하. 법률이 위경죄의 재범이 경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규칙이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재범의 경우에 3000유로까지 과해질 수 있다.

권 세 훈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원)